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716호, 2023. 9. 14. 공포, 2024. 3. 15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(2024.3.5. 국무회의 상정)으로,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을 인용한 조문을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3. 7. ~ 3. 14.)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제7조제7항”을 “제7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·운영) ①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제7항에 따른 실무협의회(이하 “실무협의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4조(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제7조제4항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